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통합 조례”)가 2003년 12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당초 통합조례의 취지를 살려 「녹색서구21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에 설치된 “녹색서구21위원회”를 타 자치단체와 통일을 기하고자 “녹색서구21협의회”로 명칭 변경하고자 함.
- 협의회의 구성(안 제29조)
 - 공동의장 2인, 부의장 1인, 감사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
 - 당연직 :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 위촉직 :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 2인,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하여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 여성위원 : 위촉 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
-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신설: 위촉직 위원 - 2년, 연임 가능(안 제30조)
- 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1조)
- 의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2조)
- 회의소집 및 운영(안 제33조)
 - 정기총회 : 연 1회 소집, 임시총회 : 필요 시
 -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공개 원칙
- 회의기록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4조)
- 위촉의 해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5조)

3. 참고자료

- 광주광역시푸른광주21협의회운영규정
-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4. 검토의견 (전문위원 : 서 동 근)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통합 조례”)가 2003. 12. 31폐지됨에 「녹색서구21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25조(환경보전에 대한 구민 참여등)

- ②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구에 광주광역시 서구 녹색서구21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 광주광역시 서구 녹색서구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로
-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 협의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장 : 녹색서구21위원회를 ⇒ 녹색서구21협의회로

안 제28조(기능) 위원회를 ⇒ 협의회로 각각 위원회의 명칭을 협의로 개정한 것은 시 및 타 자치단체와 통일성을 기하고자 명칭변경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29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 협의회는 공동의장 2인, 부의장 1인, 감사 1인을 포함하며 2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 ② 위원회를 ⇒ 협의회로 각각 개정하는 안이며
-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에 따른다를 삭제하였으며
- ④ 공동의장 2인 중 1인은 부구청장이 되고 1인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의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2. 위촉직
 - 가.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2인
 - 나.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하여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 ⑥ 여성위원은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각각 신설 보완하였으며,

안 제30조(회의) ⇒ (임기)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를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 당연직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이며

안 제31조(분과위원회)

-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분과위원회별로 호선한다.
- 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별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안 제32조(의장의 직무)

-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조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 제33조(회의소집 및 운영)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 ③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안 제34조(회의기록 및 보존)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출석위원의 성명, 직 및 수
3. 제반 보고사항
4. 부의 안건과 그 내용
5. 의사
6. 표결 참가자 성명
7. 기타 협의회 또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의장과 부의장, 간사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일반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제35조(위촉의 해지)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임기 내에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협의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기타 이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 제31조(분화위원회), 안32조(의장의 직무), 안 제33조(회의소집 및 운영), 안 제34조(회의기록 및 보존), 안 제35조(위촉의 해지)등을 각각 신설 보완 조치하여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31조(시행규칙)를 ⇒제36조(시행규칙)로 개정하였음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31일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통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본 조례를 개정 및 신설 보완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